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1021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호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범규, 기명관

피 고 주식회사 B

담당변호사 박일섭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계에 관하여 2017. 2. 23.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40,774,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계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2016. 3.부터 2016. 11.까지의 30,170,93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7. 2. 23.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7. 3. 24.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가 되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증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C는 원고에게 30,170,934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8. 12. 말경에 피고가 보낸 최고서를 통해 이 사건 기계의 매매사실을 알았음에도 2020.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집행관은 2018. 8. 22. 공장 내에 C가 운영하던 E 명의의 배출확인서 서류 등이 확인되어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압류를 집행한 사실,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D이 C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2018. 12. 2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 3. 원고의 위 기계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장이 2019. 1. 15.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2020. 1. 28.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와 D 사이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을 2018. 12. 21.경에 알았다고 할 것이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압류를 하면서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C가 위 기계를 인도하면 무자력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계를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 28.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3자 이의의 소에서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주장을 하였고, 위 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매수한 내역을 제출하고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9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3자 이의의 소에서 2019. 8. 14.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이 사건 기계는 C 소유라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주장을 한 사실, 위 제3자 이의의 소에서 2020. 1. 7. 이 사건 기계가 피고 소유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2020. 1. 28. 위 판결선고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수익자와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4. 4. 14. 선고 63다827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므로 제척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사해행위취소 대상 적격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와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고, 피고는 D로부터 위 기계를 증여받은 사람으로 전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C와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론종결 후 청구취지 변경을 위해 변론 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만약 원고가 C와 D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변경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하면 역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적격에 흠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별지 목록

• 기계들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1. 인쇄물가공절단기 1조

기계모델명 : SWPM-600

시리얼넘버 : SW20191029-C94-1

2. 인쇄물가공절단기 1조

기계모델명 : SWPM-600

시리얼넘버 : SW20191029-C94

3. 냉각기(오성) 1대

